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
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민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8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7.

발 의 자 : 박민규·김동아·문진석
민형배·김남희·김 윤
박정현·윤준병·이춘석
이주희·이정문·서미화
홍기원·최민희·손 솔
최혁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음. 특히,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(이하 출연연)이 그간 축적해 온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정의 혁신과 연구성과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출연연의 인공지능(이하 AI) 전환을 지원하고 AI 플랫폼 제공 등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(이하 연구회)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.

이에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·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

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, AI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 연구협력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.

아울러,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이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설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(안 제5조의3 신설 등).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부설기관)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② 부설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.

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인공지능 기반 연구기관
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·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제21조(사업)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 6. ~ 8. (생략)	<u>제5조의3(부설기관)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</u> <u>② 부설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.</u> 제21조(사업)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인공지능 기반 연구기관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·지원</u> <u>7. ~ 9. (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</u>